

의안번호	제 522 호
의 결 연 월 일	2013년 월 일 (제 323 회)

충청북도 향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3년 8월 2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22
----------	-----

제출연월일 : 2013년 8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항결핵제의 무료 제공에 따른 투약의 불성실이 우려되어 보급수수료(1개월 2,000원)를 징수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3년부터 직접복약확인 치료 사업을 실시하여 결핵환자의 투약여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생략 ※ 현행 조례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향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향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1995-04-28 조례 제 02193호
(일부개정) 2005-09-30 조례 제 28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내의 시군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대상) 수수료징수 대상은 전염성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자중 보건소장이 치료대상자로 선정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3. 3. 26, 2005. 9. 30>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주민등록법」상의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4. 「행형법」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제3조(수수료 징수위탁) 수수료는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당해 보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대상자 1인 1개월 기준 항결핵제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9. 30]

제5조(수수료징수 및 불입) 수수료는 항결핵제 보급시마다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 교부금) 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징수금중 그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재활용)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 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 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 15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8. 12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3. 26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28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30 조례 제2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결핵예방법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3년 국가결핵관리지침

6) 수수료 징수

가) 환자로 하여금 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규칙적인 복약 유도도 치료 효율을 높이고자 수수료를 징수

나) 수수료 징수기준과 방법은 시·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기준에 의하여 징수

(단, 잠복결핵감염치료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재소자, 외국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가능)

※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삭제도 가능함

다) 징수된 수수료는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한 결핵사업 재활용